

의안번호	2203830
의 퇴 인	김주영 의원
회 답 일	2024.11.15.
추 계 번호	24B3708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공무원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억원, 2029년 1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9억원(연평균 1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128	1,150	1,173	1,197	1,221	5,868	1,17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공무원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이하 “공무원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는 공무원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제2항) 1. 인력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연1회 이상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그 밖에 공무원근로자들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됨(제2항) 1.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가. 공무원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나. 공무원근로자들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제3항) 1. 공무원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무원근로자들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것 2.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제5항) 1. 기획재정부 제2차관·교육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인사혁신처차장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체·산업별 연합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음(제6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3	안 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제1항)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제2항) 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발전협의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제3항) 그 밖에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기획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은 단장과 2개의 과 및 단원으로 함(제1항)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	—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
3	안 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	• 미대상 — 기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0조(기획단)	○	—
5	안 제13조(수당 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2.0

(2024.11. 기준, 단위: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은 현행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임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2023년 3월 31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²⁾ 운영이 종료되어 본 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내용임
 - 그러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과 달리 본 제정안에 따른 논의의 대상은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함
 - 제정안에 따른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임

[표 2]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제정안 비교표(설치 및 기능)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등근로자”라 한다)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력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2)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연1회 이상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무직위원회 및 공무직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기획단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
 -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 3월에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으며, 공무직위원회의 운영비에는 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기 위한 참석 수당, 회의장소 임차료 등 수용비 등이 편성되어 있음

[표 3]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제정안 비교표(설치 및 기능)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행정안전부 차관·교육부 차관·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 2. 위원장이 상정된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것 2.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교육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인사혁신처차장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공무직발전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계,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	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①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행정기관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소속된 사람 ③ 발전협의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획단)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은 단장, 2개의 과 및 단원으로 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10조(기획단)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은 단장과 2개의 과 및 단원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발전협의회·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공무직위원회 운영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과 기획단 규모 등은 유사하나, 제정안에 따른 공무직위원회 위원수가 상향 조정되어 수용비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2023년의 경우 1~3월 편성된 예산이므로, 추계기간 동안 공무직위원회의 운영비용은 3년간(2020~2022년) 공무직위원회의 운영비의 평균값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표 4] 공무원위원회 운영비 현황: 2018~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3월	연평균
운영비	—	—	1,250	959	911	187	1,040

주: 1. 각 연도 예산 자료이며, 2020년은 예비비로 운영됨

2. 연평균은 2023년 예산액을 제외하고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 제정안에 따라 공무원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억원, 2029년 1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9억원(연평균 12억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128	1,150	1,173	1,197	1,221	5,868	1,1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회	02-6788-3737	nhee@assembly.go.kr